

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21(월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11. 25(금)
- 상정일자 : 2016. 12. 07(수) 제22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-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종전보다 완화하기 위하여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[별표1] 7호, 8호, 9호 개정사항을 「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류지웅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[별표1]을 준용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(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) 및 농·임업용 창고를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별표 5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